

제134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23. 6. 22.

□ 안 건 명 : 마곡지구 10-2단지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134차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 의견을 보완·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주변 아파트가 인접해있어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공사 중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가 필요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준수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업무 시행 철저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 관리 필요
- 감리보고서 인쇄비 미적용(감리보고시스템, 건설사업관리업무시스템 활용)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중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항 목		검 토 의 견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공사특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립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로 사료됨.
	공사수행방식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공사수행방식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여건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가용인력의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의 근거를 위해서, 가용인력의 실무경력 사항에 대해 근거 제시 필요.
사업관리방식 검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체계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 및 직접감독 기술인력 부족·배치자격 미충족 등으로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됨.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용어 변경 검토 : 기술자 ⇒ 기술인, 기술지원기술자⇒기술지원기술인 ○ 공사착공 전 각 공종별 충분한 도면검토가 필요하므로, 기술지원기술인이 사업초기 투입되어 도면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에 대한 검토 필요.
기 타		○ 공사난이도 산정 시 골조공사비 비중을 23.3%을 반영하였으나, 정확도를 위하여 '유사시설물 평균 골조공사 비율 조사' 및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의 자료를 참고하여 규모·연면적·세부 스페이스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고 재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에정공정포 첨부 필요
종합의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023년 6월 12일

심의위원 :

※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글파일 별도 송부)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항 목	검 토 의 견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공사특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공사수행방식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사업여건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사업관리방식 검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별첨 참조
	기 타	-
	종합의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023년 6월 15 일

심의위원 :

별첨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에서 다음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후 조치 바랍니다

1.직접인건비 산출시 전기,통신, 소방 근무일수를 월 20.6일로 적용했으나 직접경비인 현장 주재비 산출시 근무일수는 월 22일로 상이하게 적용한바 이의 적정성

2.직접경비인 소방 현장주재비 산출시 상주인원 근무인·월을 31.86으로 계상하였으나 소방 건설사업기술자는 비상주 인원없이 상주인원만 59.9인월로 책정된 것과 상이하니 이의 적정성

3.손해보험료 산정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구득요율에 50억 초과 구간 요율이 있으나 이를 구분 적용치 않고 7,014,589,536원에 30억초과 50억이하 요율 0.668%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바 이의 적정성

4.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월수 산정에서 사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관리,사업정보축적관리의 22.3인월에 난이도 1.41을 적용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최종 적용인원수는 난이도가 적용 안 된 22.3인월로 계상되었는바 이의 적정성

5.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월수 산정시 적용하는 공사난이도의 골조공사비중을 23.3%로 계상함. 이 골조공사비중 산정시 적용한 총공사비는 순공사비에 제잡비가 적용된 금액인 반면에 골조공사비는 순공사비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골조공사비중 산정의 적정성

2023. 6 16(금) 까지 본 검토서를 e-mail(eunki13@seoul.go.kr)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항 목		검 토 의 견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공사특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공사수행방식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사업여건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사업관리방식 검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기 타		○ 과업설명서 2쪽 그림이 없음, 7쪽 표 3번항의 내용이 일부 잘렸음, 67쪽 감점기준에서 발표시간초과시 0.1점 감점 -> 발 표시간 5분 초과당 0.1점 감점 제안
종합의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023년 6월 16일

심의위원 :

※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글파일 별도 송부)

2023. 6 16(금) 까지 본 검토서를 e-mail(eunki13@seoul.go.kr)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항 목		검 토 의 견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공사특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공사수행방식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사업여건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사업관리방식 검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기 타		○
종합의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023년 6월 13일

심의위원 :

※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전명: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항 목		검 토 의 견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공사특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의견 없음
	공사수행방식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의견 없음
	사업여건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의견 없음
사업관리방식 검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의견 없음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의견 없음
기 타		○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p.16) ②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여야 한다 ○ ⑫ 필요시 실시설계~임직원(p.21)→ 과 실시설계사업책임기 술자 등과 합동으로
종합의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023년 6월 16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항 목		검 토 의 견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공사특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공사수행방식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사업여건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사업관리방식 검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방기계분야 및 소방전기분야 동시 소요 자격 보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특급1인, 초급1인 으로 배치가 가능함에 따라 과업설명서 10페이지 6)항을 아래 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4에 따른 기술인 으로서 소방기계분야 및 소방전기분야 소요자격 동시 보유자” ○ 소방분야에 대한 기술지도, 기성검사, 준공검사등을 수행하 기 위해 기술지원기술인을 기술사 또는 특급 비상주로 배치하고 소방분야 기술지원 인월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기 타		○
종합의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023년 6월 15일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항 목		검 토 의 견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공사특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공사수행방식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사업여건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주변 아파트가 인접해있어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공사 중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가 필요함
사업관리방식 검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공통업무(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난이도 적용 재검토
용역비의 적정성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감리보고서 인쇄비는 미적용(감리보고시스템, 건설사업관리 업무시스템 활용) ○ 현지사무원의 노임단가는 2023. 1. 기준 단순노무종사원 단가 적용할 것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중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6조)
기 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준수 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업무 시행 철저 ○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 관리 필요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용역의 경우 ‘안전보건비’를 포함하여 발주할 것
종합의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023년 6월 16일

심의위원 :